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
사업내용	○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, 자기결정권 존중,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			
사업비	121,701천원 (국비)81,413천원 (시비)40,288천원			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37,776천원 〔기타〕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정신건강과	이경희	박계용	김정규
16601	06601	2133-7830	2133-7581	2133-7835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79,589)	(x81,413)	(x1,824)	(x2)
	118,965	121,701	2,736	2
민간위탁금	(x5,860)	(x5,860)	(x-)	(x-)
	8,371	8,371	0	0
자치단체경상보조	(x73,729)	(x75,553)	(x1,824)	(x2)
금	110,594	113,330	2,736	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
민간위탁금	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		
	○ 광역 치매지원센터 공공후견인 지원 8,371,000원	=	8,371천원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113,330,000원	=	113,330천원		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○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

□ 사업근거

○ 치매관리법 제12조의3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(연례반복)

○ 지원대상 : 중증치매노인

○ 수행주체 :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및 자치구 치매안심센터

○ 사업내용 : 피후견인(후견대상자) 발굴 및 선정, 공공후견인 선발 및 활동

지원

○ 소요예산 : 121,701천원(국비 81,413천원, 시비 40,288천원)

□ 추진경위

○ 2018. 9. 20. :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실시

(단위 : 천원)

□ 2024년도 추진일정

	(21)		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21,701	
사업계획서 수립	2024.01~2024.03		계획수립
사업수행	2024.01~2024.12	121,701	사업비 교부, 공공후견 지원 관리
사업평가	2024.12~2024.12		사업평가, 사업비 정산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○ 공공후견인 사업 25개 자치구 실시: 공공후견인 선발·양성교육 83명(누계), 피후견인 발굴·지원 49명(누계)			
○ 공공후견인 사업 25개 자치구 실시: 공공후견인 선발·양성교육 177명(누계), 피후견인 발굴·지원 68명(누계)				
2023년도	○ 공공후견인 사업 25개 자치구 실시: 공공후견인 선발·양성교육 200명(누계), 피후견인 발굴·지원 100명(누계) ('23. 9월말 기준)			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치매노인의 사회적 활동지원과 자기결정권 존중, 인권보호에 기여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39,660) 59,020		(x-) 0	(x39,660) 59,020			(x-) 0
2021	(x81,553) 121,911	(x-)	(_X -)	(x81,553) 121,911	(x81,553) 121,911	(_X -)	(X-) 0
2022	(x81,841) 122,343		(x-)	(x81,841) 122,343			(x-) 0